

#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는

각종 법령,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고창군내 14개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고창군 홈페이지(<http://gochang.go.kr>)를 통해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 창 군



# - 목 차 -

## I. 세제 ..... 3

1. 지방세 감면 확대·신설 / 5
2.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6
3.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7
4. 지방세 제도 개선 / 8

## II. 재난안전·소방 ..... 9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 11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 수강 가능 / 12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 13
4.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 14
5.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 15
6.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16
7.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제정 / 17
8. 소방기본법 개정 / 18

## III. 농·축·수산·식품 ..... 19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 21
2. 동물보호법 영업종류의 등록 범위 추가 / 22
3. 동물학대와 동물이용 금지행위 대상 추가 / 23
4.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 허용 / 24
5.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재허가 / 25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26
7.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 27
8.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 28
9. 학교 의무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 29
10. 양식장 청정 지하수개발 지원 사업 시행 / 30

## IV. 문화·예술·관광 ..... 31

1.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상향 지원 / 33
2. 찾아가는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 34
3.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 지원 / 35

## V. 복지·여성·보건 ..... 37

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 39
2.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단가 확대 / 40
3.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강화 / 41
4.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신설 / 42
5.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 43
6.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44
7. 난임치료 시술지원(보조생식술) 추가 개선 / 45
8.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 46
9.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47
10. 저소득 아동급식 5,000원 단가 인상 / 48

## VI. 환경·녹지 ..... 49

1. 2018년 통합허가 대상 안내 / 51
2. 석면조사대상 범위 확대 및 농도측정 의무화 / 52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변경 / 53
4. 폐기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54
5.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 55
6.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 56
7.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57
8.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58
9.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단계 추가 / 59
10.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준수사항 신설 / 60
11.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 지침 추가 시행 / 61
12. 지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주체 변경 / 62

**Ⅶ. 건설·교통 ..... 63**

- 1.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 65
- 2. 시내버스 공공WiFi 구축 추진 / 66
- 3.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 67
- 4. 주거급여 지원 개선 / 68
- 5.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 69
- 6.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70
- 7.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71
- 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규제개선 / 72

**Ⅷ. 경제·산업 ..... 73**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75
- 2.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기관 변경 / 76
- 3.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시행 / 77
- 4.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 / 78

**Ⅸ. 일반행정·법무 ..... 79**

- 1.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제도 활성화 / 81
- 2.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82
- 3. 지방보조금 민간경력을 인정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 / 83

**※ 2018년 달라지는 제도(요약) ..... 85**

# I. 세제

1. 지방세 감면 확대·신설 .....	5
2.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6
3. 지방세납부 방법(인터넷 은행) .....	7
4. 지방세 제도 개선 .....	8



# 1. 지방세 감면 확대 · 신설

재무과 (☎ 063-560-2483)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고,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됩니다.

-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하였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

### ▶ 주요내용

#### < 확 대 >

-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 \* 기존 :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50%,
  - \* 개정 :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기존 : 취득세 10년(7년 100%, 이후 3년 50%) 감면
  - \* 개정 : 취득세 15년 100% 감면

#### < 신 설 >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재산세 100%)
-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 50%)
- 자산관리공사 '위기중소기업 재임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50%)
-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 15%~20%)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2.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재무과 (☎ 063-560-2483)

### ■ 고소득층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이 동반 인상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현재 국세세율의 10% 수준임
- 이번 세율인상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을 국세의 10% 비율로 동반 인상하는 것임

#### < 고소득층,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인상 >

##### ▶ 고소득층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3억원~5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 인상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0.3% 인상

구분	기 존			개 정		
	과세표준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개인	~1억5,000만원	6%~35%	0.6%~3.5%	~1억5,000만원	6%~35%	0.6%~3.5%
	1억5천만원~5억원	38%	3.8%	1억5천만원~3억원	38%	3.8%
				<b>3억원~5억원</b>	<b>40%</b>	<b>4.0%</b>
	5억원 초과	40%	4.0%	<b>5억원 초과</b>	<b>42%</b>	<b>4.2%</b>
법인	~2억원	10%	1.0%	~2억원	10%	1.0%
	2억원~200억원	20%	2.0%	2억원~200억원	20%	2.0%
				200억원~3,000억원	22%	2.2%
	200억원 초과	22%	2.2%	<b>3,000억원 초과</b>	<b>25%</b>	<b>2.5%</b>

#####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대주주의 주식(3억초과)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율 0.5% 인상

기 존			개 정		
구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구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대주주 주식	20%	2.0%	대주주 주식	3억원 이하	2.0%
				<b>3억원 초과</b>	<b>2.5%</b>

- 조정대상지역 내(전북 해당없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인상분의 10%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3. 지방세 납부 방법(인터넷은행) 확대

재무과 (☎ 063-560-2493)

■ 종이고지서 없이도 시중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내역을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제는 시중은행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함
- 지방세 수납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추가되어,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지방세 납부(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가능

####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 ▶ 추진배경 : 스마트뱅킹 사용자 증가,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등으로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법을 모색 필요
- ▶ 주요내용
  - 시중은행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정기분) 고지·납부 가능
    - ⇒ 수시분 가능세목 : 지방세
    - ※ 모바일 앱 고지·납부 서비스 은행(8개사)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 ▶ 시 행 일 : 2017년 12월 1일

## 4. 지방세 제도 개선

재무과 (☎ 063-560-2493)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합니다.

-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종의 심의 결정사례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세무조사 대상자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연장(조사시작일 10일전→15일전)하고, 500만원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45일→2개월)함

### < 지방세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 ▶ 주요내용

-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 절차 간소화

기 존	개 선
- (대상) 모든 불복청구 신청 건 -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평균 60일 소요)	일정 요건* 충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부서에서 결정(처리기간 30일 이내) * ①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종의 심의 결정 사례 ②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조사시작일 10일전→15일전)
-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징수세액 조정 (1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조정 (45일→2개월)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VI. 재난 안전·소방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	11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 수강가능 .....	12
3. 국민 안전진흥 기본법 시행 .....	13
4.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	14
5.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	15
6.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16
7.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제정 .....	17
8. 소방기본법 개정 .....	18



#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재난안전과 (☎ 063-560-2662)

■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쉽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기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4대 분야(교통·재난·치안·맞춤) 101개 항목과 10종의 실시간정보, 지진대피소,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 2018년부터 시설·산업·보건·사고 등 4대 분야가 추가된 총 8대 분야 240개 항목이 제공될 예정임
- 아울러, 생활안전지도 앱상 디자인(UI)과 위치정보 정확성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내 주변 생활안전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임

##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

### ▶ 생활안전지도란?

-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하나의 지도상에 통합하여 웹(www.safemap.go.kr)과 생활안전지도 앱 상에 공개하는 서비스

### ▶ 주요내용

- \* 기존 : 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 등 4대 분야 101개 항목
- \* 추가 : 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안전·사고안전 등 4대 분야 139개 항목

■ 총 8대 분야 240개 항목 서비스 제공



##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 수강가능

재난안전과 (☎ 063-560-2662)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인터넷을 활용해 안전과 관련한 법정교육\*\* 수강가능

\*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집체교육으로만 실시되었던 법정안전교육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토록 개정됨
- 다만, 인터넷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얻어야함

#### < 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 다양화 >

▶ 추진배경 : 광역시·도의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운영됨에 따른 승강기 관리교육\*의 시간·거리상 제약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3년마다 받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 주요내용

- 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을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에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추가함

▶ 시 행 일 : 2017년 9월 4일

※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7.9월~12월), 사이버 승강기교육센터 운영('18.1월)

###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재난안전과 (☎ 063-560-2656)

■ 분산되어 있는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단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시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 필요

○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안전교육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내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설 및 사업장 등 안전교육

-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공연장·영화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관리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기관·시설장)

○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가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20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 육성·교육훈련, 경력관리·경력인증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

○ 시 행 일 : 2017년 5월 30일

## 4.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재난안전과 (☎ 063-560-2662)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되어 시설물 관리체계가 일원화 됩니다.

- 기존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 2종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시설물의 관리체계가 그 크기, 규모, 면적 등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었음. \*이하 “시특법”, \*\*이하 “재난법”
-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법과 시특법으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전점검 주기,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시특법 제3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기준과 점검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배경 >

▶ 추진배경 : 이원화 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로 안전점검 방법, 주기, 자격 등이 달라 업무 혼선 및 관리자의 이해도 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 해소

▶ 주요내용

- 재난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폐지하고, 시특법 제3종 시설로 편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및 관리 강화
- 관리중인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안전)시설				재난위험(취약)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특정관리 대상시설	5,083	5,023	2,620	2,062	341	60	58	2	재난법
시특법 대상시설	1,788	1,786	548	1,123	115	2	2	-	시특법

▶ 시 행 일 : 2018년 1월 18일

## 5.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재난안전과 (☎ 063-560-2656)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2008년에 폐지되었던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부활됩니다.

- 그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행정 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영향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구 분	현 행	변 경
행정계획		<p><b>재해영향성 검토</b> (5천㎡이상 2km이상, 입지 적정성 등 검토)</p>
개발사업	<p><b>사전재해영향성검토</b> (개발면적 5천㎡이상, 2km이상)</p>	<p><b>소규모 재해영향평가</b> (5천~5만㎡, 검토항목 및 검토절차 완화)</p>
		<p><b>재해영향평가</b> (5만㎡이상15km이상 정량적 평가 및 지진위험성 검토 강화)</p>

- 시 행 일 : 2018년 10월(예정)

## 6.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재난안전과 (☎ 063-560-2657)

### ■ 고층건물 화재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6층 이상 건축물 신축시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확대 : 11층 이상 건축물 →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2018. 1. 27. 시행)

### ■ 연립주택 등 건물 내 주차장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물 내 주차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하여 적용 소방시설 기준이 없었으나,
  - 2018. 1. 27일부터는, 50세대 이상으로서 주차용도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2017. 1. 26. 개정)

### ■ 요양병원 입주자의 거동불편 및 화재시 피난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설치기준이 없었으나,
  - 2015년 6월 30일 이후부터 신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 기존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5. 6. 30)
스프링클러설비	연면적 600㎡ 이상	좌 동
간이스프링클러	연면적 300~600㎡ 미만	연면적 600㎡ 미만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면적 300㎡ 이상	모든 대상
자동화재 속보설비	바닥면적 500㎡ 이상	모든 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기존 요양병원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 유예

## 7.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제정

재난안전과 (☎ 063-560-2657)

### ■ 소화기가 오래되어 작동이 안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분말소화기에 사용연한을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분말소화기에 대해 내용연수가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8년 1월 28일부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 교체하도록 함

- 단,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함

####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정 >

- ▶ 추진배경 : 노후소화기 작동불능 및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화재 시 초기진화를 통해 피해 확대 방지
- ▶ 법령개정사항
  - (16.1.27.)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의무 부여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17.1.26.)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설정
    -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화기는 1년이 되는 날(18.1.27)까지 교체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17.2.25.) 내용연한이 지난 소방용품의 연장사용 근거법령 마련
    - 내용연수가 지나도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3년 연장 사용 가능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 미교체시 조치사항
  -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 결과 10년 경과 분말소화기 조치명령 발부
- ▶ 시 행 일 : 2018년 1월 28일

## 8. 소방기본법 개정

재난안전과 (☎ 063-560-2657)

### ■ 앞으로는 풍등이나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17년 12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 ■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소방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018년 6월(예정)부터는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

##### ▶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내용 추가)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2017. 12. 8. 국회 의결, 2017년 12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조항 신설)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18년 6월(예정)

## VI. 농·축·수산·식품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	21
2. 동물보호법 영업종류의 등록 범위 추가 .....	22
3. 동물학대와 동물이용 금지행위 대상 추가 .....	23
4.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 허용 .....	24
5.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재허가 교육 .....	25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26
7.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	27
8.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	28
9. 학교의무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	29
10.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 시행 .....	30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농업기술센터 (☎ 063-560-8831)

■ 우수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 후계인력의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합니다.

- 기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신규 취농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백만원/월, 최장 3년간 지원  
\* 기존 : 3명, 2년간 5백만원/연 → \* 확대 : 14명, 3년간 12백만원/연
- 선정방법 : 후계농 선정절차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서면평가(시·군) → 면접평가 및 최종 선정(도) → 사업추진(시·군)

##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

- ▶ 추진배경 :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지원으로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청년 일자리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18~40세의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이고, 건강 보험료 납부액 일정 소득액 이하
  - 사업규모 : 14명(고창군)
  - 사 업 비 : 113백만원(국비 79, 도비 10, 군비 24)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2. 동물보호법 영업종류의 등록 범위 추가

축산과 (☎ 063-560-2613)

###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의 등록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동물보호법 상 영업등록의 종류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이 있었음
-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 범위를 추가하였고,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연 1회의 정기 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또한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4호의 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 제34조 영업의 신고가 영업의 허가로 전환되고, 미허가 영업 시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

#### < 동물보호법 영업의 범위 >

- ▶ 영업의 범위 : 개·고양이·토끼·패럿·기니피그·햄스터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
- ▶ 영업의 세부범위(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동물)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의 사체·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의 처리 시설, 건조·멸균분쇄 방법의 처리하는 시설, 동물전용의 봉안시설
- 동물판매업 :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영업
- 동물수입업 :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생산업자 등 영업자에 판매하는 영업
- 동물생산업 :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동물전시업 : 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할 목적으로(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동물원은 제외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
- 동물미용업 : 동물을 영업장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동물운송업 : 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 2조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 ▶ 시 행 일 : 2018년 3월 22일

### 3. 동물학대와 동물이용 금지행위 대상 추가

축산과 (☎ 063-560-2613)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금지행위 대상 추가와 이를 위반 시 벌칙이 상향되었습니다.

-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으며,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
- 동물이용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추가되었고,
  - 동물이용 금지행위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고,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위반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신설하였음

## 4.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 허용

축산과 (☎ 063-560-2618)

■ 소·돼지를 제외한 기타가축은 해당 관할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이 가능합니다.

○ 기존 도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지와 계류장, 검사실험실, 소독시설 등의 시설기준과 시설별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이 있어야했음

○ 2017년 11월 17일부터 소·돼지를 제외한 기타가축\*은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경우」 시설구조, 시설별 면적과 도축관련 시설을 조정하거나 생략하게 하여 허가를 할 수 있음

\* 말·당나귀·사슴 10두 이상, 양 50두 이상, 토끼 100두 이상, 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꿩 500수 이상 도축 가능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차량의 시설기준은 차량의 길이 7.3미터, 폭 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이어야 함

### <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 허용 >

▶ 추진배경 : 닭·오리 등 기타가축의 도축여건을 개선하고 불법도축을 방지

▶ 주요내용 :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도축업이 가능(소, 돼지 제외)

\* 기존 : 일정 부지, 시설기준과 시설별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이 있어야 함

\* 개정 : 차량시설기준은 길이 7.3미터 이상, 폭 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생략 가능함

▶ 시행일 : 2017년 11월 17일

## 5.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재허가를 위한 교육

해양수산과 (☎ 063-560-2642)

■ 어업허가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이 연장되고,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 등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이 종전보다 2배 연장되고,
  -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수산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업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재허가를 위한 교육 >

▶ 추진배경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어업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

▶ 주요내용

- 어업허가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 연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1 → 2년
  -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 1 → 2년
  -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 위반 : 5 → 10개월
-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수산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이수

▶ 시 행 일 : 2017년 12월 3일

##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해양수산과 (☎ 063-560-2633)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수산직불금이 인상됩니다.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액이 어가 당 당초 55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됨
- 조건불리지역 대상은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이나,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 지역임
  - '17년 대상지역 : 21개 도서(군산 14, 고창 2, 부안 5)
    - 8km미만( 2개도서) : **고창 2(내죽도·외죽도)**
    - 8km이상(19개도서) : 군산 14(개야도·연도·어청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말도·비안도·두리도·방축도·명도·죽도), 부안 5(위도·식도·상왕등도·하왕등도·거륵도)

#### <수산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 요건>

##### ▶ 신청자격

-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어업인
  -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 지급요건

- 시장·군수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수산 직불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7.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

해양수산물과 (☎ 063-560-2642)

▣ 우수 청년인력(40세미만의 어업창업 및 예정자)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합니다.

- 어업경력 3년 이내 신규 어업창업자로 어업창업관련 교육 이수자 중 역량이나 의지가 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함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백만원 / 월, 최장 3년간 지원
- 지원절차 : 대상자추천(시·군) → 대상자 선정(도) → 사업추진(시·군)

###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

▶ 추진배경 :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및 어촌 노동력 고령화 문제 해소 도모

- 어가인구 : ('10) 171천명 → ('12) 153천명 → ('14) 141천명 → ('16) 126천명
- 어가 고령화율(65세 이상) : ('10) 23% → ('12) 28% → ('14) 32% → ('16) 3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예정)자
- 사업규모 : 8명(군산 3, 고창 1, 부안 4)
- 사 업 비 : 76,470천원(국비 53,530, 도비 6,882, 시·군비 16,058)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8.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농업진흥과 (☎ 063-560-2521)

###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지원대상 여성농업인 연령기준을 20~65세에서 20~70세미만으로 확대
- 결혼이민자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20~24세 기혼여성 특례 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토록 제도개선

###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완화하고 가사와 농작업을 겸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마을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12개 마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주민의 확대요구에 따라 '18년부터 22개 마을로 확대

### ■ 농촌지역 출산여성의 산후건강관리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기존 1일 5만원씩 최대 70일간 지원하던 것을 '18년 최저임금과 농촌지역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1일 6만원(+1만원)으로 인상

\* 지원금액 : 350만원 → 420만원(+70만원) / 전년대비 20% 인상

## 9. 학교 의무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자치행정과 (☎ 063-560-2348)

### ■ 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의무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됩니다.

- 의무급식 대상이 도내 전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총 41개교 약 5천 8백여명이 혜택을 받아,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급식지원 단가를 '17년에 이어 '18년에도 2년 연속 200원씩 인상하였고, 의무급식비 일부는 로컬푸드 가공품 구매에 사용되어, 학생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농가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 학교 의무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

- ▶ 추진배경 : 학교급식에 대한 보호자 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
- ▶ 주요내용
  - 지원대상(2018년도)
    - \* 기존 : 35개교 초·중(3,505명)
    - \* 변경 : 41개교 초·중·고(5,866명)
  - 지원단가(200원 인상)
    - \* 기존 : 초 2,400원, 중 3,100원
    - \* 변경 : 초 2,600원, 중 3,300원, 고 3,300원
- ▶ 시 행 일 : 2018년 3월 2일

## 10.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 사업 시행

해양수산과 (☎ 063-560-2646)

■ 최근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양식장에 수산·양식어류 폐사 예방을 위하여 관정시설을 지원합니다.

○ 동·하절기 양식장 냉·난방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전기료 등의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양식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지원함

### <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 >

- ▶ 추진배경 : 내수면 양식장은 최근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양식장 용수 및 적정 수온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
- ▶ 사업내용 : 관정 개발(착정 및 설치, 수중 모터, 전기공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인·허가를 득한 내수면 양식어업인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5년)
  - 2018년 고창군 지원규모 : 2개소
  - 2018년 사업비 : 14백만원(도비 2.5 균비 5.9 자부담 5.6)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VI. 문화·예술·관광

1.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상향 지원 ..... 33
2. 찾아가는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 34
3.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 지원 ..... 35



# 1.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상향 지원

문화관광과 (☎ 063-560-2452)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분들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17년 대비 1만원 상향 지원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으로 예산범위내 발급

- '17년도에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 2018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1인당 7만원으로 상향 지원함

※ 미사용 금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7만원으로 상향 지원 >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7만원)

○ 발급기간 : 2018년 2월 ~ 11월 ※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 사 용 처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서점, 음반, 숙박, 여행상품, 운송,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

## 2. 찾아가는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문화관광과 (☎ 063-560-2442)

### ▣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은 연1회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기존엔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야영장 사업자는 타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사례 발생
- 시·군 권역별 찾아가는 야영장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 참석 기회 확대에 따른 안전교육 미이수 예방 및 야영장 사업자 안전의식 강화

####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확대 실시 >

- ▶ 추진배경 :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 캠핑인구 증가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
- ▶ 주요내용
  - 야영장 관계법규 해설 및 안전사고 사례 설명,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 교육 등
    - \* 기존 : 도내 등록 야영장 사업자 대상 연1회 안전교육 실시
    - \* 개정 : 인접 시·군을 권역별(4개 권역)로 나누어 연4회 교육 실시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3.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 지원

문화관광과 (☎ 063-560-2468)

#### ■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활동비를 '17년 대비 10만원~30만원씩 상향 지원합니다.

-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는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 지원대상은 보유자, 명예보유자(특별지원금),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전수장학금), 보유단체이며
    - '17년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로 매월 보유자 90만원, 보유단체 70만원, 명예보유자 80만원, 전수교육조교 40만원, 전수장학생 20만원을 지급하였음
  - 2018년 1월 1일부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수활동비를 각 10만원씩 상향 지원하고, 보유단체에 보유자가 없는 경우 30만원 상향 지급 (보유자 10만원, 보유단체 80만원 ⇨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 100만원)
- ※ 단,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은 '17년과 동일 지원함

#### <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 지원 >

-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원형 보존·전승 및 전승활동 의욕 제고 등 자긍심 고취를 위함
-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활동비 '17년 대비 10~30만원씩 상향지원
  - \* (2017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매월 보유자 90만원, 보유단체 70만원 지원
    - 명예보유자 80만원, 전수교육조교 40만원, 전수장학생 20만원 지원
  - \* (2018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매월 보유자 100만원, 보유단체 80만원 지원
    - ⇨ 보유단체 내 보유자 無 100만원
    -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은 '17년과 동일 지원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VI. 복지·여성·보건

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	39
2.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	40
3.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강화 .....	41
4.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신설 .....	42
5.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	43
6.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44
7. 난임치료 시술지원(보조생식술) 추가 개선 .....	45
8.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	46
9.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47
10. 저소득 아동급식 5,000원 단가 인상 .....	48



# 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주민복지실 (☎ 063-560-2281)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라면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월 5만원이나 1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저축하여야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생계급여수급 청년이라면 본인 부담금 없이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공제해 정부에서 부담금을 대신 저축하고, 청년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임

## < 청년희망키움통장 시행(안) >

▶ 추진배경 :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저축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 청년(15세~34세)

▶ 지원방식

-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매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하여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30만원, 3년 평균 1,440만원) 매칭

※ 지속적인 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참여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 × 0.63]

ex) 근로소득이 81만원(청년통장 가입 대상자의 월 평균 소득)일 경우 평균 적립액

월 저축액			3년 적립 총액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장려금	합 계	
10만원	302,030원 = (810,000 - 330,586) × 0.63	402,030원	1,440만원

▶ 지원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

▶ 시 행 일 : 2018년 4월

## 2.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주민복지실 (☎ 063-560-2298)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액(아동양육비) 증액과 아동지원연령이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만13세 미만 → 만14세 미만
  - 지원단가 : 월 12만원 → 월 13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 지원단가 : 월 17만원 → 월 18만원

### <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양육비 증가 >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 주요내용

○ 복지급여액 증액 및 아동지원연령 확대

\* 기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3세 미만, 월 12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7만원)

\* 개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8만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 3.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강화

주민복지실 (☎ 063-560-2292)

---

■ 고창군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2017년까지 설치완료)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등 지원액을 강화합니다.

○ 난방비(5개월분)

- '17년 : 1,500천원(월 300천원) ⇨ '18년 : 1,600천원(월 320천원)  
※ 월 20천원 인상 지원

○ 냉방비(2개월분)

- '17년 : 100천원(월 50천원) ⇨ '18년 : 200천원(월 100천원)  
※ 월 50천원 인상 지원

○ 양곡비

- '17년 : 20kg 7포대(음·면 소재) ⇨ '18년 : 20kg 8포대 지원  
'17년 : 20kg 6포대(동 소재) ⇨ '18년 : 20kg 8포대 지원

---

## 4.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신설

보건소 (☎ 063-560-8728)

---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공백 없는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8년 8월까지 고창군보건소 부지 내에 6억여 원을 들여 353㎡, 2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신설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에게 1:1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검진, 인지증진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치매안심센터에 쉼터(인지증진프로그램실), 카페(가족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 중증화를 방지 하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에게 정서적 지지기반 제공

## 5.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보건소 (☎ 063-560-8758)

▣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만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확대합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 기존 : 생후6개월 ~ 59개월 이하

\* 변경 : 생후6개월 ~ 만12세 이하

○ 접종장소 : 지정의료기관 및 일부 보건소

○ 접종권장시기 : 10월 ~ 12월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어린이 건강보호 및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

▶ 주요내용

○ 2018-2019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12세 이하

▶ 적용시기 : 2018년 9월(예정)

## 6.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위생과 (☎ 063-560-2888)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2017.4.18) · 시행(2018.4.19.)

- 공중위생관리법 제정(1999. 2. 8.)에 따라 기존 시행하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으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리 사항은 (舊)공중위생법을 적용하였음
-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2017.4.18) · 시행(2018.4.19)
- 소관부처 조정 : 복지부(舊,공중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관리법)
- 관리기관
  - 식약처 : 법령 개정, 표시기준, 기준·규격 관리, 수입신고·검사
  - 지자체 : 영업신고 및 사후관리
- 관리품목 : 9종 → 19종
  - 기존(9종) :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 확대(10종) :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건티슈

## 7. 난임치료 시술지원(보조생식술) 추가 개선

보건소 (☎ 063-560-8724)

### ▣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10.1.) 후 추가 개선

-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검토 거쳐 추가 개선, 2018년 1월부터 시행
-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적용
-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 적용
-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 ~ 만44세 12개월인 경우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

-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

## 8.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신규시행

주민복지실 (☎ 063-560-2296)

■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원장과 보육교사가 운전·취사·행정 등 기타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일부 지원

### <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

- ▶ 추진배경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육 외 업무에서 벗어나 영유아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보육도우미 지원 필요
-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어린이집
- ▶ 지원내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1일 2시간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보육도우미를 채용 시 월 10만원 지원
- ▶ 시 행 일 : 2018년 3월

## 9.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신규시행

주민복지실 (☎ 063-560-2296)

### ▣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은 0~2세 아동과 달리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17년 기준 최대 약 5만 5천원정도 부담해야만 했음
- '18년도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부모의 보육료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월 1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추진계획 >

- ▶ 추진배경 :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 지원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3~5세 아동에게 월1만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 ▶ 지원방식 : 기존 보육료 결제방식과 동일하게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 시 행 일 : 2018년 3월

## 10. 저소득 아동급식 5,000원으로 단가 인상

주민복지실 (☎ 063-560-2297)

▣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 식사 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합니다.

-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을 경우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긴급복지대상의 가구아동,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 등

### < 저소득 아동급식 5,000원으로 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더 좋은 재료를 이용한 영양가 있고 균형잡힌 식사 제공

▶ 주요내용

○ 연중, 방학중,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 인상 4,500원 ⇨ 5,000원(500원 인상)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4,000원 ⇨ 4,500원(500원) 인상

○ 대 상 : 18세미만의 저소득 아동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 VI. 환경·녹지

1. 2018년 통합허가 대상 안내 ..... 51
2. 석면조사대상 범위 확대 및 석면농도측정 의무 추가 ..... 52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변경 ..... 53
4.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54
5.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 55
6. 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 56
7.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57
8.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58
9.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단계 추가 ..... 59
10.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준수사항 신설 ..... 60
11.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 61
12. 지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주체 변경 ..... 62



# 1. 2018년 통합허가 대상 안내

환경위생과 (☎ 063-560-2876)

■ 2018년에는 통합허가 대상 업종(4개)\*이 추가되어, 해당 업종의 사업장을 새로 설치·운영하고, 규모가 1~2종(대기 또는 폐수)인 경우 통합허가(7개 법률 개별 인허가\*\* → 1개 통합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1, 20302), 1차철강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20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기 또는 폐수 1·2종 사업장에 대해 통합 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어, 해당 업종의 1~2종 사업장(대기 또는 폐수)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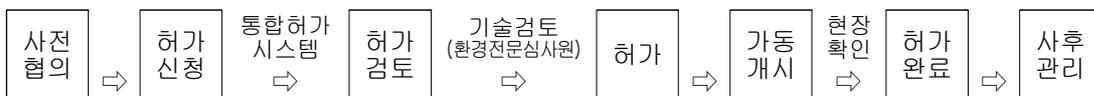
## < 환경통합관리제도 >

▶ 주요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시행(2017.1.1.)에 따라 환경영향이 큰 업종(19개) 대기·폐수 1~2종사업장 인허가 통합

\* 기존 : 개별 인허가, 서면제출 ※ 허가권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변경 : 1개 통합허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허가권자 : 환경부장관

▶ 허가절차



▶ 연도별 해당업종(해당업종 기존 사업장은 4년간 유예기간 적용 받음)

- (2017) 3개(발전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처리업)
- (2018) 4개(석유화학계, 1차철강제조업, 1차비철금속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 (2019) 4개(석유정제품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기초화학물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2020) 2개(펄프종이,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 (2021) 6개(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제조업,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 2. 석면조사대상 범위 확대 및 석면농도측정 의무 추가

환경위생과 (☎ 063-560-2882)

■ 2018년 1월부터 학원 석면건축물 조사대상 연면적이 1000㎡이상→ 430㎡이상으로 확대되고,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신규 조사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이상 1000㎡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 조사대상 학원건축물 : '09년 이전 착공 신고된 건축물 대상

○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부여되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2년마다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18년 5월부터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새롭게 석면건축물 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조사

\* 추가 :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석면건축물 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 조사

### < 건축물 석면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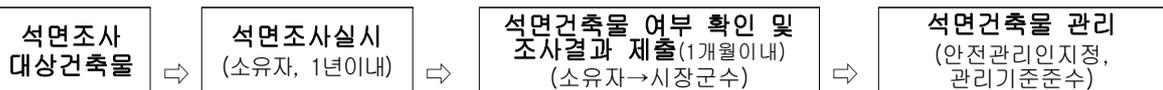
▶ 근거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 조사대상

\* 기존 : 공공건축물(500㎡ 이상), 유치원, 초·중등·대학교(모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학원 연면적 1000㎡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 변경 : 공공건축물(500㎡ 이상), 유치원, 초·중등·대학교(모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학원 연면적 430㎡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 건축물 석면조사



###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변경

환경위생과 (☎ 063-560-2872)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5개 항목 중 석면, 오존이 삭제되고, 신규유해물질에 미세먼지, 곰팡이 2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5개항목 중 석면과 오존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곰팡이로 변경 시행됨
- 신규 유해물질(미세먼지, 곰팡이) 추가에 따른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 필요성이 낮은 기존 관리물질(석면, 오존) 삭제
  -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사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 실내농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오존의 주요 발생원은 사무기기나 전기집진장치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이용공간에는 오존 발생원의 분포가 거의 없음
-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이후 그간 지도점검 결과(2005~2014), 지금까지 석면 및 오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전혀 없음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 <sup>3</sup>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μg/m <sup>3</sup> )	미세먼지 (PM-2.5) (μg/m <sup>3</sup> )	곰팡이 (CFU/m <sup>3</sup> )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 4.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환경위생과 (☎ 063-560-2876)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됨
-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소각 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순환자원 인정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 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됨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 ▶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폐자원에너지 회수, 중소기업, 지정폐기물, 폐기물부담금 기 납부 경우 등 감면
- ▶ **부과산정** : 매립·소각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기준 : 전년도 매립·소각 처분량
  - 요율 : 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가연성/불연성) 등 종류별 차등 세율

폐기물종류	매립(원/kg)	소각(원/kg)
생활폐기물	15	10
사업장폐기물(가연성)	25	10
사업장폐기물(불연성)	10	-
건설폐기물	30	10

- 산정지수 : 전년도 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  
※ 최초 적용연도를 1로 정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 ▶ **부과(정기)** : 부담금 신고(~3월말) → 납부고지(~4월말) → 납부(~5.20일)
- ▶ **부과징수** : 생활폐기물(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한국환경공단)
- ▶ **근거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 5.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환경위생과 (☎ 063-560-2875)

■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노출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으로,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3배 가량 더 노출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차로 전환을 유도함
- 특히,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기에 부적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2018년 LPG차 전환 대상으로 추진함
-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09년 이전, 15인승 이하)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

###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

- ▶ 추진배경 : 경유차량 폐차 유도 및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
- ▶ 주요내용
  -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09년 이전)을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 구입하여 동일 용도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 시 해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등 우선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관할 시·군에 신청, 관련 절차 등에 따라 LPG 차량으로 전환 시 보조금 지원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6. 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환경위생과 (☎ 063-560-2882)

###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과거 질 낮은 화장지와 신문지 사용으로 휴지통을 비치하는 잘못된 관습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해충 발생의 원인
- 2018년 1월 1일부터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휴지통을 비치함

### ▣ 다른 성별의 작업자 출입시(청소·보수 작업)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출입시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남자화장실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소변기 가림막 설치

####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냄새의 원인이 되는 대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 악취 방지와 미관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과 위생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다른 성별이 청소·보수 시 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
- 인권보호를 위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소변기 가림막 설치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7.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산림공원과 (☎ 063-560-2605)

■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나무의사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의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하게 됨

-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만 이수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짐

○ 다만 2018년 6월 28일 당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됨

\*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보호법

###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생활권역 수목의 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개선내용

\* **현행** :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불법으로 실내소독업체가 대행

\* **개선** :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고 수목진료 수행 가능

▶ 시 행 일 : 2018년 6월 28일

## 8.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산림공원과 (☎ 063-560-2591)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 일부에 한하여 우선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제로 변경함
-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는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 및 목재산업 발전 도모
- ▶ 주요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한 일정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 제품을 일정 비율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
- ▶ 시 행 일 : 2018년 5월 29일

## 9.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단계 추가

환경위생과 (☎ 063-560-2875)

###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이전단계로 “고농도(나쁨 이상) 발생”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고농도예보 → 예비주의보\* → 주의보 → 경보」 발령 단계가 「고농도예보 → 고농도발생\*\* → 주의보 → 경보」 발령 단계로 변경
  - \* 예비주의보 : PM<sub>10</sub> 100 µg/m<sup>3</sup>, PM<sub>2.5</sub> 50 µg/m<sup>3</sup> 이상 2시간(권고, 자율운영)
  - \*\* 고농도발생 : PM<sub>10</sub> 81 µg/m<sup>3</sup>, PM<sub>2.5</sub> 51 µg/m<sup>3</sup> 이상 1시간
-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이전단계로써 “고농도(나쁨 이상) 발생” 단계를 추가하여 발령

####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단계 추가 >

- ▶ 추진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로 도민의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
- ▶ 주요내용
  - 발령 단계 변경
    - \* 기존 : 「고농도예보 → 예비주의보 → 주의보 → 경보」
    - \* 변경 : 「고농도예보 → 고농도발생 → 주의보 → 경보」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10.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준수사항 신설

환경위생과 (☎ 063-560-2876)

■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유해성 폐기물 분석결과의 관할 행정기관 제공 의무 신설
  - 2018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 <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준수사항 신설 >

- ▶ 추진배경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 분류·처리 방지 및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의무 신설
    -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이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11.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환경위생과 (☎ 063-560-2882)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를 대상으로 기존 시행하던 감시항목인 총유기탄소와 아연 외에 페놀류 3종(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을 추가 검사합니다.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서 신규 수질오염 물질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정확한 배출실태를 파악

##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대상 감시항목 추가검사 시행 >

▶ 추진배경 :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배출 실태 파악 필요

### ▶ 주요내용

- 대 상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 항 목 : 페놀류 3종(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
- 선정기준 : 업종 및 규모 등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선정
  - 업종별(1~82), 사업장규모별(1~5종),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구분별(청정, 가, 나, 특례)
- 방 법 : 검사기관의 장이 수질검사 결과를 매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공공폐수처리시설
  - 지자체(연구원) : 폐수배출시설
- 검사기간 : 항목별 각 2년

### < 연도별 추가 감시항목 >

- 2017년 : 총유기탄소(TOC), 아연(Zn)
- 2018년 :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
- 2019년 : 아크롤레인, 붕소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12. 지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주체 변경

상하수도사업소 (☎ 063-560-8988)

■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지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음
- 지하수('17.3.29~) 및 먹는물('17.6.12~) 수질검사 시료채취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직접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시료채취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을 구체화함

### < 지하수·먹는물 시료채취 주체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변경 >

- ▶ 추진배경 :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수질검사의 절차)
- ▶ 주요내용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하여야 한다.

구분	내 용	근 거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용 지하수(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li> <li>· 신고용 지하수(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li> <li>· 정기검사용 지하수(허가 및 신고)</li> <li>·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li> <li>·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li> <li>·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법 제7조</li> <li>· 지하수법 제8조</li> <li>·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li> <li>·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질검사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li> <li>· 소규모급수시설, 옥내급수관, 저수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li> </ul>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수(청소, 조경, 공사, 소방용 등)</li> <li>· 시장·군수 지정 민방위 비상급수 등</li> <li>· 공공급수용 개발·이용 지하수(수도법 제1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질검사대상)</li> <li>·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li> <li>·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li> </ul>

- ▶ 시 행 일 : 2017년 3월 29일, 2017년 6월 12일

## VI. 건설·교통

1.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 65
2. 시내버스 공공WiFi 구축 추진 ..... 66
3.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 67
4. 주거급여 지원 개선 ..... 68
5.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 69
6.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70
7.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71
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규제개선 ..... 72



# 1.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건설도시과 (☎ 063-560-2572)

■ 고창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전 구간에 대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은 1,000원, 학생·어린이는 500원에 이용가능합니다.

○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

## <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

- ▶ 추진배경 : 군민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통한 복지혜택 부여
- ▶ 이용요금
  - 성인 : 1,000원
  - 학생, 어린이 : 500원
- ▶ 시행주체 : 고창군(군비 100%)
-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 2. 시내버스 공공WiFi 구축 추진

건설도시과 (☎ 063-560-2572)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시내버스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 시내버스에서도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임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면 시내버스 안에서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인터넷 검색, SNS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

### < 시내버스 공공WiFi 구축사업 추진 >

- ▶ 추진배경 :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국민의 통신비 부담완화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 ▶ 주요내용
  - 2018년부터 중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18년부터 '21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
  - 소요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자체가 1:1 매칭 펀드 방식으로 부담
  - 추진일정 : 2018년 상반기 중 인프라 구축, 7월 초부터 서비스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인프라 구축
    - 지자체는 지역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설치 대상 선정
- ▶ 시 행 일 : 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확정 후 지방비 확보예정

### 3. 사업용 대형차량(승합·화물)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건설도시과 (☎ 063-560-2572)

■ 2018년부터 대형 승합·화물 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강화하고 졸음운전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상차량) 사업용 차량 9m 이상 승합차(버스),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 예정('17.1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장착비용) 장착비용 대당 50만원(자부담 1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18~2019년, 2년간(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부과)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 2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

- ▶ 추진배경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16.7.)에 따른 기존운행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하여 사고예방 방지
- ▶ 주요내용 :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 ▶ 시행주체 : 전라북도(시외버스), 시장, 군수(시외버스 제외)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4. 주거급여 지원 개선

종합민원과 (☎ 063-560-2385)

###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 등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 \* 중위소득의 43%이하(2018년 기준중위소득 4,519천원, 주거급여대상 1,943천원)
- 2018년 10월 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을 2015년 주거급여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8%)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함

####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 ▶ 추진배경 :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지원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과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 ▶ 주요내용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1일부터)
    - \* 기존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주거급여대상자 제외
    - \* 개정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 주거급여 지원액(임차료,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상향
    - \* 기존 : 임차료(4인가구) 20만원 / 자가구 보수한도액(대보수) 950만원
    - \* 개정 : 임차료(4인가구) 20.8만원(4%증) / 자가구 보수한도액(대보수) 1,026만원(8%증)
-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5.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민생경제과 (☎ 063-560-2364)

■ 귀농·귀촌의 증가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쇠퇴한 마을의 활성화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합니다.

- 지자체가 보유중인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일자리·소득보전 방안 연계로 안정적인 주거정착 지원
-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주변마을에 대한 소득창출시설(경작지 등) 및 공동시설 등을 단지형으로 개발하거나, 빈농가를 매입·임대하여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자(독거노인 등)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 추진배경 : 대규모 택지조성과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은 주민 반대, 인근 지가하락, 지자체 복지비용 증가 등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 제안에 따른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마을정비와 연계하는 공급모델 추진

#### ▶ 주요내용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통해 주택수요와 유형을 제안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상향식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추후 주변지역의 정비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 지원

※ 2018년 마을정비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개마을 220호 공급

- 대상지역 : 완주군 고산면(100호), **고창군 무장면(120호)**
- 사업비 : 359억(국비 322, 군비37)

▶ 사업착수 : 2018년 ~ 2020년

## 6.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 063-560-2635)

▣ 도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 2018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판매시설 및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임
-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된 3개시·군(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23개 도서지역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국비 752억원과 지방비 145억원 등 총 897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안) >

- ▶ 대상지역 : 3개시군(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23개 도서
- ▶ 계획기간 : 2018 ~ 2027(109개년)
- ▶ 사업비 : 897억원(국비 752, 도비 73, 군산시 73)

시군명	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발굴현황	57	897	42	723	7	22	8	152	

- 군산시(국비80%, 지방비 20%), **고창·부안군(국비 100%)**

- ▶ 주요내용 : 도로 및 방파제 등 기반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 소득증대 시설 확충

### < 도서종합개발계획 >

구분	1차 (’88~’97)	2차 (’98~’07)	3차 (’08~’17)	4차(안) (’18~’27)	비고
예산액(억원)	110	328	766	897	

## 7.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건설도시과 (☎ 063-560-8969)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 역할을 담당할 지역 내 전문가, 마을활동가의 절대부족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고 지역인구는 현저히 감소하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현장 활동가 양성 및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자생적 도시재생 유도
- 지역 내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양성,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행정과 주민 중간조직 역할 강화

###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 추진배경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도시재생은 기존의 정부주도가 아닌 주민참여가 필수인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 ▶ 주요내용

-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하여 소개하고 타 지역의 재생사례 공유
-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연회, 주민참여사업 발굴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1기수 당 30명씩, 주3회, 30시간 연간 90명 수료(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사업착수 : 2018년

## 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규제개선

건설도시과 (☎ 063-560-2552)

■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제한 층수와 업소별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업소별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2개였으나,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 한해 3개 이하로 완화하였고,
  - 건물 앞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제한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였음
- 또한, 벽보의 크기를 '가로 60cm이내, 세로 90cm 이내'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하도록 현실화 함

###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규제 개선 >

- ▶ 추진배경 : 과도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 주요내용
  -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 설치제한 층수 완화
    - \* 기존 : 총수량 2개 이내, 3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
    - \* 개정 : 총수량 3개 이내(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5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
  - 벽보의 크기를 적법한 게시시설의 규격이내까지 가능토록 현실화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VI. 경제·산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75
2.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기관 변경 ..... 76
3.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시행 ..... 77
4.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 ..... 78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민생경제과 (☎ 063-560-2359)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약 463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미만 등의 요건 충족 시)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함
  -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지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 >

-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 당 월 13만원
- ▶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가능
  -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이상), 임금체불공개사업주, 공공부문 등
-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최저임금 월 157만원의 120%)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원칙 등
- ▶ 신청방법 : 2018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2018년 1월오픈)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보험공단 지사, 지역별 고용센터, 각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2.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기관 변경

민생경제과 (☎ 063-560-2352)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변경, 분할 및 합병, 해산, 조직변경 신고의 처리기관이 도청에서 협동조합 소재지 시청, 군청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전북도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분할 및 합병, 해산, 조직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였음(2012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18년 1월 1일부터 협동조합 각종 신고의 처리기관이 전북도청에서 협동조합 소재지 시청, 군청으로 변경됨
- 또한 신고처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신고 및 설립·변경 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해당 소재지 시청, 군청에서 부과하게 됨

### < 협동조합 민원처리기관 변경 >

▶ 추진배경 : 원거리 소재 협동조합에서 각종 신고를 위하여 도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 필요

▶ 주요내용

○ 협동조합 민원처리기관을 소재지 시청, 군청으로 변경

\* 기존 :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처리

\* 개정 : 협동조합 소재지 시청, 군청 경제부서에서 처리

○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과), 군산시(지역경제과), 익산시(익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읍시(지역공동체육성과), 남원시(경제과), 김제시(경제교통과), 완주군(공동체활력과), 진안군(전략사업실), 무주군(산업경제과), 장수군(건설경제과), 임실군(지역경제과), 순창군(경제교통과), 고창군(민생경제과), 부안군(미래창조경제과)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3.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시행

민생경제과 (☎ 063-560-2357)

####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만 6세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임산부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4,000	108,000	121,000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대리 신청(친족)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말
- 사용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5월말(총 7개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에너지원 구입 지원으로 평시보다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동절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

민생경제과 (☎ 063-560-2358)

■ 뿌리산업 분야 기업의 R&D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중소·중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기존에는 뿌리기업이 연구기관·대학 등과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과제에 응모하는 형식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음
- '18년부터는 뿌리기업이 기술수요 조사서를 제출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매칭을 통해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 < 전북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 >

▶ 추진목적 : 뿌리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현장밀착형 R&D기술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2020
- '18년 사업비 : 660백만원(도비 300, 생기원 30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 뿌리기업
- 주요내용 : 뿌리기업 기술혁신역량 진단 및 정밀분석을 통한 생산현장 밀착형 R&D기술지원
- 주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 문의처 : 전라북도 산업진흥과(☎063-280-226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063-920-1288)

▶ 시행일 : 2018년 2월

## VI. 일반행정·법무

1.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제도 활성화 ..... 81
2.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82
3. 지방보조금 민간경력을 인정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 .... 83



# 1.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제도 활성화

기획예산실 (☎ 063-560-2256)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주민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제 개폐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주민 서명자 수에 대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별 인구 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법령에 최소 서명자 수 요건 없이 최대 서명자 수 요건만 규정하는 방안 등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게 됨

○ 주민의 서명자료 작성 시 직접 대면 서명방식에서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서명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본인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발의 청구권의 실질적인 기준 완화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전자서명법」에 서명·기명 날인 의제규정이 있어 제도적 여건 구비
- 전자서명으로 주민 본인확인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도모

※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http://www.ejorye.go.kr))을 통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온라인 전자서명 시행 시범 운영('18.1~3월)

## 2.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주민복지실 (☎ 063-560-2285)

### ▣ 도내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등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다문화 마을학당'을 운영(14개시군, 160개반)하여 결혼이민자 중심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였으나,
  - 2018년부터는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사업'으로 개편하여 외국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
    - \* 각 시군별 이주민 밀집지역(외국인근로자 채용기업 등)을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시군별 주민센터, 학교, 기업 등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 문화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녀 및 도민을 위한 '이중언어학당', '다문화이해학당'도 특화 운영 ※ 서비스 신청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사업 >

- ▶ 추진배경 : 육아,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교육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 \* 한국어교육, 자녀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 등
-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및 자녀, 외국인근로자, 난민, 도민 등
-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마을학당 운영 (이주민 학당 포함)
    - 수준별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당 및 다문화 이해학당 운영
  - 찾아가는 가족교육, 학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자녀 교육 운영
  -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
  - 가족캠프, 문화재능 봉사, 자조모임, 상담·사례관리 등
- ▶ 시 행 일 : 2018년 2월 1일

### 3. 지방보조금 민간경력을 인정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

기획예산실 (☎ 063-560-2252)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시민강사 활용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활동경력을 반영하여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 그간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을 적용하여 일반 강사의 강사료를 지급하여 왔음
- 이 기준에서 1~5급으로 구성된 일반강사는 직급·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최근 교육프로그램에 NGO, NPO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강의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감안하여, 해당분야의 경험을 통해 현실감각을 익힌 유능한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기준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함

#### < 일반강사 강사수당 지급기준 변경 >

▶ 추진배경 : 시민사회 활동가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

▶ 주요내용

○ 일반강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마련

\* 해당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 급 액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시간보상수당
1급강사	12년 이상인자	25만원	12만원	12만원
2급강사	8년 이상인자	13만원	8만원	8만원
3급강사	3년 이상인자	8만원	5만원	5만원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1. 세제·부동산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지방세 감면 확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재산세 5년 50%)</li> <li>○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감면 (취득세 7년 100%, 3년 50%)</li> </ul>	<p><b>&lt;확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재산세 3년 100%, 2년 50%)</li> <li>○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감면(15년 100%)</li> </ul> <p><b>&lt;신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감면</li> <li>○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감면</li> <li>○ 사내벤처 분사창업 감면</li> <li>○ 자산관리공사 위기중소기업 지원 감면</li> <li>○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li> </ul>	재무과 (063-560-2483)
2. 고소득층, 양도소득 과세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5억원 : 3.8%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0%</li> <li>○ 고소득층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000억원초과 : 22%</li> <li>○ 대주주 주식(3억초과)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율 :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5억원 : 4.0%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li> <li>○ 고소득층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4.5%</li> <li>○ 대주주 주식(3억초과)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율 : 2.5%</li> </ul>	재무과 (063-560-2483)
3.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종이고지서,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은행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정기분) 고지·납부</li> <li>○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li> </ul>	재무과 (063-560-2493)
4. 지방세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불복청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li> <li>○ 세무조사 시작 10일전 통지</li> <li>○ 10만원 이하 재산세 일시부과</li> <li>○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4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종의 심의 결정사례의 경우(1백만원 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생략</li> <li>○ 세무조사 시작 15일전 통지</li> <li>○ 20만원 이하 재산세 일시부과</li> <li>○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2개월)</li> </ul>	재무과 (063-560-2493)
2. 재난안전·소방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 4대 분야(교통·재난·치안·맞춤) 101개 항목 및 10종 정보 제공	○ 시설·산업·보건·사고 등 4대 분야 추가 → 총 8대 분야 240개 항목 제공	재난안전과 (063-560-2662)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인터넷 수강 가능	<신 설>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인터넷 수강 가능 -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7.9~12월) - 사이버 승강기교육센터 운영('18.1월)	재난안전과 (063-560-2662)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신 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 국민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사업장등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에 관한사항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사항	재난안전과 (063-560-2656)
4.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 시설물 안전관리 이원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 제1, 2종 시설 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시특별 제3종 시설로 편입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별 제3종시설로 편입('18.1.18 시행) -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사항 강화	재난안전과 (063-560-2662)

5.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 행정계획·개발사업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운영	○ 행정계획 단계 : 재해영향성 검토 개발사업 단계 : 사업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또는 재해영향평가 시행	재난안전과 (063-560-2656)
6.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11층 이상 건축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 <신 설>  ○ 요양병원 면적에 따라 적용 - SP설비 : 연면적 600㎡이상 - 간이SP설비 : 300㎡~600㎡미만 - 자동화재속보설비 : 500㎡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300㎡이상	○ 6층 이상 건축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18.1.27.시행)  ○ 50세대 이상 연립주택 등의 200㎡ 이상인 지하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18.1.27.시행)  ○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SP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15.6.30시행 / '18.6.30.소급 적용)	재난안전과 (063-560-2657)
7.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정	<신 설>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지정	재난안전과 (063-560-2657)
8. 소방기본법 개정	○ <신 설>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로교통법으로 규정)	○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 가능('17. 12월말 공포 후 즉시 시행)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기본법 조항 신설, '18.6월 시행 예정)	재난안전과 (063-560-2657)

### 3. 농·축·수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사업 - 사업량 : 3명 지원 - 지원단가 : 5백만원/연, 2년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사업량 : 14명 - 지원단가 : 1백만원/월, 3년간	농업기술센터 (063-560-8831)
2. 동물보호법 영업종류의 등록범위 추가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추가	축산과 (063-560-2613)
3. 동물학대와 동물이용금지 행위 대상 추가 및 벌칙 상향	○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축산과 (063-560-2613)
4.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축장 허용	○ 일정 부지, 시설기준과 시설별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서만 도축이 가능	○ 소·돼지를 제외한 닭·오리 등 기타가축에 대하여 기준에 맞는 차량에서도 도축 가능	축산과 (063-560-2618)
5.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재허가를 위한 교육	○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 거짓, 부정한 방법 : 1년	○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 연장(2년)  ○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수산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이수	해양수산물과 (063-560-2642)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550천원 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600천원으로 인상 지원	해양수산물과 (063-560-2633)
7.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	<신 설>	○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영어 정착자금 지원	해양수산물과 (063-560-2642)
8.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 여성농업인생생카드 - 대상연령 : 20~65세  ○ 농번기 공동급식 - 지원마을 수 : 12개 마을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 5만원*70일간 지원	○ 여성농업인생생카드 대상연령 확대 - 대상연령 : 20~70세 미만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마을 확대 - 지원마을 수 : 22개 마을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 6만원*70일간 지원	농업진흥과 (063-560-2521)

9. 학교 무상급식 고교까지 전면 확대	○ 지원대상 : 초·중학교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지원단가 : 초 2,400원→ 2,600원 중·고 3,100원→ 3,300원	자치행정과 (063-560-2348)
10.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 사업	<신 설>	○ 내수면 양식장에 지하수 개발 지원 -5년간 100개소	해양수산과 (063-560-2646)

#### 4. 문화·예술·관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상향 지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6만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7만원	문화관광과 (063-560-2452)
2.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 확대 실시	○ 등록 야영장 사업자 대상 연1회 안전교육 실시	○ 인접 시·군을 권역별(4개 권역)로 나누어 연4회 교육 실시	문화관광과 (063-560-2442)
3.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지원	○ 무형문화재 보유자 80만원, 보유단체 60만원 등	○ 무형문화재 보유자 90만원, 보유단체 70만원 등	문화관광과 (063-560-2468)

####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신 설>	○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근로사업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됨	주민복지실 (063-560-2281)
2.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3세 미만, 월 12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7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8만원)	주민복지실 (063-560-2298)
3.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강화	○ 난방비 : 연간 1,500천원 ○ 냉방비 : 연간 100천원 ○ 양곡비 : 연간 6~7포대	○ 난방비 : 연간 1,600천원(5개월*32만원) ○ 냉방비 : 연간 200천원(2개월*10만원) ○ 양곡비 : 연간 8포대(읍·면·동 동일 적용)	주민복지실 (063-560-2292)
4.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신설	<신 설>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보건소 (063-560-8728)
5.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 생후6개월 ~ 59개월 이하	○ 생후6개월 ~ 만12세 이하로 확대	보건소 (063-560-8758)
6.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공중위생관리법: 1999년 제정 (공중위생법 폐지) - 단, 9종품목 폐지된 공중 위생법 적용 * 세척제·행균보조제, 위생물 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2018.4.19.) ○ 관리품목(19종) - (기존) 9종, (추가) 10종 *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화장지, 일회용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건티슈 ○ 소관부처 : 복지부 → 식약처 ○ 관리기관 - 식약처 : 법령개정 등 총괄 - 지자체 : 영업신고 등	환경위생과 (063-560-2888)
7. 난임치료 시술의 추가개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횟수를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적용 제한 ○ 공난포가 나온 경우 지원 또는 본인부담(필요시 개인 선택)	○ '17.10.1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전 지원을 받았던 난임 부부에 대하여 보장횟수 1~2회 추가 적용 ○ 공난포가 나온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보건소 (063-560-8724)

8.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신규시행	<신 설>	○ 평가인증 어린이집 월 10만원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	주민복지실 (063-560-2296)
9.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신규시행	<신 설>	○ 민간·가정어린이집 3-5세 아동에게 월 1만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주민복지실 (063-560-2296)
10. 저소득 아동급식 5,000원으로 단가 인상	○ 연중, 방학중,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1식) 4,500원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1식) 4,000원 ○ 18세미만 저소득 아동 대상	○ 급식단가(1식) 5,000원으로 인상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1식) 4,500원으로 인상 ○ 18세미만 저소득아동 대상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주민복지실 (063-560-2297)

## 6.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계속)	○ 사업장 시설 설치 시 각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 인허가 서면신청(허가권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장 시설 설치 시 1개의 통합허가 온라인 신청(허가권자 : 환경부장관) - '18년 대상 업종 4개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1,20302), 1차철강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	환경위생과 (063-560-2876)
2. 석면조사대상범위 확대 및 석면농도측정 의무 추가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중 - 학원(연면적 1,000㎡이상)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중 - 학원(연면적 430㎡이상) - 기존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조사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건축물 실내석면농도 자기측정 의무 추가	환경위생과 (063-560-2882)
3.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항목 변경	○ 권고기준 항목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권고기준 항목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	환경위생과 (063-560-2872)
4.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신 설>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 ○ 폐기물처분부담금제 - 유용한 자원을 소각 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 순환자원 인정제 -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	환경위생과 (063-560-2876)
5.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신 설>	○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09년 이전)을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 보조금 지원 -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만 해당	환경위생과 (063-560-2875)
6. 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신 설>	○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 남자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 청소·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 표지판 설치	환경위생과 (063-560-2882)
7.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민간자격(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유사자격 보유 기술자(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가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 실시	○ 국가자격(나무의사 등)을 갖춘 기술자만 나무병원 설립 및 수목진료 가능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보호법	산림공원과 (063-560-2605)

8.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목재제품명인이 만든 목재 제품 등에 한하여 우선구매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장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산림공원과 (063-560-2591)
9.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단계 추가	○ 고농도예보→주의보→경보	○ 고농도예보→ <b>고농도발생</b> →주의보→경보	환경위생과 (063-560-2875)
10.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신 설 >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분석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 신설	환경위생과 (063-560-2876)
11.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추가 시행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해 감시항목 검사 시행 - 2개 항목 : 총유기탄소, 아연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해 감시항목 검사 추가 시행 - 5개 항목 : 총유기탄소, 아연, 페놀류 3종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	환경위생과 (063-560-2882)
12. 지하수 및 먹는물 시료 채취 주체 변경	○ 도, 시·군 공무원이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신청인이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수질검사 하도록 변경 ○ 먹는물(상수도 등) 시료채취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하여 검사토록 변경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88)

## 7. 건설·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전면시행	<신 설>	○ 농어촌버스 이용자에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제 적용 - 성인 1,000원 / 학생,어린이 500원	건설도시과 (063-560-2572)
2.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신 설>	○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도민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건설도시과 (063-560-2572)
3. 사업용 대형차량(승합·화물)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 신 설 >	○ 사업용 대형차량(승합·화물)에 차로이탈 경고기능장치 장착을 지원함으로써 졸음 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지원 - 사업용차량 9m이상 승합차(버스),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대상	건설도시과 (063-560-2572)
4. 주거급여 대상자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8.10.) 주거급여 지원액 상향	종합민원과 (063-560-2385)
5.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신 설>	○ 지자체 제안에 따라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과 주변마을 정비계획 추진	민생경제과 (063-560-2364)
6.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8~2017 - 대상지역 :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2027 - 대상지역 :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 사업량 : 22개 도서 58개 사업	해양수산과 (063-560-2635)
7.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신 설>	○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전문가 등의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아카데미 신설	건설도시과 (063-560-8969)
8.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 업소별 간판 총수량 2개 이내 간판 설치제한층수 3층 이하 벽보크기 제한(60cm×90cm)	○ 업소별 간판 총수량 3개 이내(상업·공업·준주거) 간판 설치제한 층수 5층 이하 벽보 크기는 적법한 게시시설의 규격이내	건설도시과 (063-560-2552)

## 8. 경제·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li> <li>-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li> <li>-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공개사업주, 공공부문 제외</li> <li>○ 2018년 1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li> </ul>	민생경제과 (063-560-2359)
2. 협동조합 설립·변경 등 민원처리기관 변경	○ 전북도청에서 민원처리	○ 협동조합 설립, 변경, 분할 및 합병, 해산, 조직변경 신고의 처리기관이 전북도청에서 협동조합 소재지 시청, 군청으로 변경	민생경제과 (063-560-2352)
3.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간 : '16.11월~'17.1월말</li> <li>○ 사용기간 : '16.12월~'17.4월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간 : '17.10월~'18.1월말</li> <li>○ 사용기간 : '17.11월~'18.5월말</li> </ul>	민생경제과 (063-560-2357)
4.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 연구기관·대학 등과 사전에 컨소시엄 구성하여 R&D과제 응모하여 기술개발 사업 진행	○ '18년부터는 뿌리기업이 기술수요 조사서 제출 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매칭을 통해 기술개발 진행	민생경제과 (063-560-2358)

## 9. 일반행정·법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제도 활성화	○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인구 규모등을 세분화하여 최소 서명자 수 요건 없이 최대 서명자 수요건으로 규정(완화)</li> <li>○ 서명자료 작성방법(확대)</li> <li>- 직접대면,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서명 등</li> </ul>	기획예산실 (063-560-2256)
2.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li> <li>- 한국어, 이중언어, 다문화이해교육, 가족 관계 향상교육, 문화교육 등</li> </ul>	주민복지실 (063-560-2285)
3. 지방보조금 민간경력을 인정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동가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li> <li>※ 1급 : 12년 이상, 2급 : 8년 이상, 3급 : 3년 이상</li> </ul>	기획예산실 (063-560-2252)